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용현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성 보장 및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 본부별 유사기능을 재분류 하여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전본부는 군사력 운용,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수행토록 본부체계 개편

- 1) 명칭 변경 : 전략기획본부 → 전략본부, 군사지원본부 → 전력본부
-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예비전력 소요제기 (작전본부 → 전략본부)
- 3)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등 (전략본부 → 전력본부)
- 4)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전력본부 → 작전본부)

나. 하부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

- 1)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의 확장에 대응하고,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 수행 조직 정비를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전략본부에 신편
- 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작전본부 → 전략본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본부 및 전력본부”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계획·지휘”를 “지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11.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제10조의 제목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15.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16.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17.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제11조의 제목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검토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을 “전략본부장, 전력본부장”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전략기획본부”를 각각

“전력본부”로 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전략기획본부”를 “전력본부”로 한다.

④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 중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참모 부서) ① · ② (생 략)	제3조(참모 부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 로 <u>정보본부 · 작전본부 · 전략 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u> 다.	③ ----- -- <u>정보본부 · 작전본부 · 전략 본부 및 전력본부</u> ----- --.
제9조(작전본부) ① (생 략)	제9조(작전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군사작전에 대한 <u>기획 · 계획 · 지휘</u> 및 통제	1. ----- <u>지휘</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 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u>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의2. <u>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u>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u>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 기</u>	<삭 제>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u>민군작전 및 계엄업무</u>
<신 설>	11. <u>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u>

제10조(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6. (생략)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전략본부) ① 전략본부---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3. (현행과 같음)

14.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15.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신 설>

<신 설>

제11조(군사지원본부)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 략)

3. 삭 제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6.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 기

17.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 작전

제11조(전력본부) ① 전력본부-----

--.

②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 · 검토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

<u><신 설></u>	<u>행</u> <u>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77